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의 등록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서구, 영도구, 강서구

내 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정보는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과제관리카드)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서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기록물은 영구보존대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물의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는 접수등록번호는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은 접수번호란에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거나, 시행문 서식 또는 접수인에 의하여 접수된 기록물 외의 접수기록물에 대하여는 우측 상단의 여백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표시방법에 따라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서구(○○○○실), 영도구(○○○○실)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업무부서로부터 해당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제출받아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영구보존대상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실)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부서로부터 해당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제출받아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으나, 동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영구보존대상 기록물로 등록·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구청장, 영도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시정] 기 생산된 「연도별 주요업무계획」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